2021 정읍천 빛축제

Ⅰ 축 제 개 요

- ❍ 슬 로 건 : **가을빛 물든 정읍천, 희망愛 빛나다.**
- ❍ 기　　간 : 2021. 10. 1(금) ~ 11. 14(일) / 매일 17:00~22:00
- ❍ 장　　소 : 달하다리 일원(달하다리~정주교)
- ❍ 주요내용 : 온라인 개막 점등, 경관조명, 포토존, SNS 이벤트 등

Ⅱ 주요 프로그램

구 분	주요 프로그램	비 고
온라인 개막 점등	· 일시 : 2021. 10. 1.(금), 19:00 · 장소 : 돌하다리 특설무대 및 정읍시공식유튜브 · 방법 : LED모니터(200인치) 및 정읍See 시청 · 내용 : 사전 영상 제작 송출	비대면
LED 경관조명 및 포토존	· 운영시간 : 매일 17:00 ~ 22:00 (5시간) · 장　　소 : 돌하다리 ~ 정주교 · 내　　용 : 정읍천변 야간경관조명(포토존) 설치 ⇒ 행복, 사랑, 희망 등 구간별 테마공간 조성 ⇒ 라벤더 파도풀, LED빛도형, LED볼라이트 등	음악 상시 송출
	· 빛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 (3개소) - 정주교(고보조명), 초산교(메시지라이트박스), 아양교(벚꽃터널)	
	· 음향시설 설치 (돌하다리~정주교)	
LED 상품증정 이벤트	· 장소 : 종합상황실 · 내용 : 주말 한정 LED상품 증정	SNS 인증시
SNS 이벤트	· 기간 : 2021. 10월 ~ 11월 · 내용 : 온라인 점등 이벤트, 사후 이벤트 · 경품 : 정읍사랑상품권(또는 온누리 상품권) 증정 · 발표 : 이벤트별 별도 진행	비대면

※ 경로당 사업비(운영비 및 난방비) 집행기준 상세내역

구분		지원내역	총액(천원)	지원기준		지출 가능한 항목
				지원액	지원시기	
등록경로당	도시비	운영비	1,000	250천원	年 4회 (1, 4, 7, 10월)	공공요금, 신문대등,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구입 (선풍기, 의자, 청소기 등) 및 수리비, 경로당 유지 수선비, **부식비**
		보험료	100	최대 100천원	年 1회	**보험료에 한정**
		난방비	1,000	200천원	5개월 (1~3월/11~12월)	연료비, 전기료, 보일러·에어콘 수리비, 냉매충전비, 추가양곡 구입비 가스구입
		간식비	200 ~400	100천원~ 200천원	年 2회(1,7월)	간식 구입비로 한정
	국비	특별 난방비	1,600	320천원	5개월 (1~3월/11~12월)	연료비, 전기료, 보일러·에어콘수리비, 냉매충전비,추가양곡 구입비, 가스구입 (에어콘, 보일러, 선풍기 구입 불가)
		특별 냉방비	200	100천원	2개월(7,8월)	
		양곡	-	20kg 1포	12개월(1~12월)	경로당내 중식, 간식재료(떡등) 사용
	시비	소독 지원	120	30천원	年 4회/ 650개소	**소독비로 한정**
미등록경로당	국비	양곡	-	20kg 1포	12개월(1~12월)	경로당내 중식, 간식재료(떡등)사용
	시비	난방비	15,600	700천원 /18개소 1,000천원 /3개소	연 2회(반기별)	연료비, 전기료, 보일러·에어콘수리비, 냉매충전비, 추가 양곡구입비
		소독 지원	120	30천원	연 4회(6~9월) /20개소	**소독비로 한정**

[추가] 2021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기금(융자) 지원 신청 알림

(담당자 : 김시은, 539-7848)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30,000천원 이내
○ 융자조건 : 2년거치 4년 균분상환(년 2%)
○ 신청기간 : 9월 17일(금)까지
○ 융자방법 :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신용보증 및 자가 담보능 농가선택 융자실행
※ 농신보는 농협 대출 심사 시 결정
○ 대상자선정 : 주민소득기금지원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후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
○ 수탁금융기관 :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

【붙임1】 농업인 기준표

[붙임1] 농업인 기준표

지원 대상 농업인 기준표

농 업 인	양 축 인	임 업 인	어 업 인
○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가구의 농지소유 규모 50,000㎡미만	○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양축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- 소, 말, 젖소, 사슴 : 70마리 미만 - 돼지,개 : 1,000마리 미만 - 산양, 면양 : 500마리 미만 - 토끼,친칠라,밍크 : 10,000마리 미만 **- 가금 : 30,000마리 미만** - 양봉 : 300군 미만	○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가구의 임야 소유규모 1,000,000㎡미만	○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속하는 어업인으로서 당해 가구의 어업규모가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- 어선이 없는 자 - 무동력선 사용자 - 90톤이하 동력선 사용자 -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· 수하(垂下),연승(延繩) 10.0ha미만 · 살포(撒布), 투석(投石) 20.0ha미만 · 가두리 2.0ha미만 · 축제식 10.0ha미만 · 육상수조식 0.2ha미만

*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
** 각각의 기준에 해당할시 지원 가능 (농지소유 4ha, 한육우 71두 → 지원불가)
(농지소유 4ha, 한육우 50두 → 지원가능)